

19세기 濟州島의 國家 儀禮(祭祀)

조 성 윤*

— 목 차 —

1. 머리말
2. 유교 국가의 제사
3. 기본 제사의 종류와 내용
4. 특수 제사의 종류와 내용
5. 맺는 말

1. 머리말

이 발표는 19세기 제주도에서 실시되었던 각종 종교 의례(儀禮) 중에서 특히 국가가 주관해서 공식적으로 치러졌던 제사(祭祀)의 종류와 내용을 검토하고, 그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 제주도 주민의 종교적 상황과 상황에 대한 국가의 대응 방식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국가 제사란 국가가 주도하는 제사를 가리킨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왜 제사를 주도하는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옛 풍습이 지금도 부분적으로 남아 도지사나 삼성사의 제사에 참여하기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 단체의 행사에 초대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무교 신앙의 뿌리가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불교 역시 무교와 깊이 상호 침투한 양상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오랫동안 「절 오백, 당 오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교와 불교의 대중적 영향력이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켰고, 따라서 유교가 지배 세력의 이념으로서만 기능했을 뿐 대중적 영향력을 별로 갖지 못했다. 이것은 국가가 제주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지배 능력이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제주도 역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형상 목사의 신당 파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유교 세력의 적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뒤 무교와 불교의 세력이 과연 얼마나 약화되었고, 반대로 유교가 얼마나 뿌리를 내렸는지는 검토된 바 없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해마다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이 각각 국가 기관인 예조(禮曹)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직대제(社稷大祭)를 비롯한 각종 제사를 거행했는데, 그 때마다 지방 수령인 목사와 현감, 그리고 대표적인 사대부가 나서서 직접 집행해야 했다. 이 제사는 중앙 정부는 물론 전국 각 지방에서 정해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행사로 기록되고 있다.

국가가 주관한 제사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배층인 유교 세력이 제주도민들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종교 행위이자, 통치 행위였다고 생각된다. 국가는 제사의 주기적 반복을 통해서 유교 이념이 정치적 차원에서 유지됨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었고, 동시에 지배 구조에 신성함을 부여하는 상징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유교의 타 종교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대중들 머리 속에 심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제의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연구가 나와 있다¹⁾. 그러나 대부분 예사상에 대한 연구에 집중될 뿐 구체적인 제의의 종류

-
- 1) 黃元九(1976), "李朝禮學의 形成過程", 『東亞細亞史 研究』, 一潮閣.
 黃元九(1981), "朱子家禮의 形成過程", 『人文科學』 45, 延世大 人文科學 研究所.
 金泰永(1973), "朝鮮初期 祀典의 成立에 대하여", 『歷史學報』 58, 歷史學會.
 한우근(1976), "朝鮮王朝 初期에 있어서의 儒敎理念의 實踐과 信仰·宗教-祭祀問題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3, 서울대 韓國史學會.
 李範稷(1991), 『韓國中世禮思想研究-五禮를 中心으로-』, 一潮閣.
 池斗煥(1994), 『朝鮮前期儀禮研究-性理學 正統論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出版部.
 琴章泰(1994), 『儒敎思想과 宗教文化』, 서울大學校出版部.
 金海榮(1992), "朝鮮初期 國家 祭禮儀의 정비와 『洪武禮制』", 『清溪史學』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와 내용 그리고 제의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살펴본 연구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 중심의 제의는 약간의 검토가 이루어지지만 지방 수준의 제의에 관해서는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濟州啓錄』에 나타난 내용을 주자료로 삼고, 그 밖에 조선왕조실록 등 다른 보조 자료를 이용해 19세기 제주도 지방에서 시행되었던 국가 차원의 제사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연구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꾸어 보려고 한다.

2. 유교 국가의 제사

조선사회는 유교 국가였고, 유교적 이념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가의 통치 행위가 유교적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대중에게 유교적 행위 양식이 뿌리 내리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이 장치들을 통해 유교 교리를 학습시키고 또 퍼져나가게 만들었는데, 이 때 가장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유교 교리의 실천 과정이 의례로 나타났다.

의례는 유교가 지니는 종교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흔히 종교의 3대 구성 요소를 교리(doctrine), 종교 의례(ritual), 공동체(community)로 꼽는다. 종교는 교리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으며, 종교 의례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는 과정과 이를 담당하는 중심 집단의 존재에 의해 유지 재생산된다. 이 점은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교의 교리는 의례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행위로 나타나며, 동시에 의례가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교리 체계 속에서 이해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사회의 유교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유교 이념, 사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을 뿐 그밖의 문제인 의례와 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의례를 다룬 연구 성과가 최근 계속 생산되고 있는데, 종교적 관점의 연구도 있기는 하지만(琴章泰, 1994), 대부분 의례의 사상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李範稷, 1991; 池斗煥, 1994).

유교 의례는 흔히 주례(周禮)를 따라 오례(五禮)로 정리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를 가리키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길례, 곧 제례(祭禮)였다.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기 때문에 길례라고 하는데, 국가와 인민을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琴章泰, 1994: 155). 길례는 기본적인 범주인 천신(天神), 지

기(地祇), 인귀(人鬼)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짜여져 있었으며(李範稷, 1994, 230), 제사 대상에 따라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등급을 구분하였다. 국가 의례는 왕을 꼭대기로 하는 중앙 정부에 의해서만 수행된 것이 아니었다. 각 지방에서도 수령을 중심으로 중앙 보다는 훨씬 축소된 형태였지만 마찬가지로 제사가 진행되었다.

<표 1> 길례의 종류와 구성

	天神	地祇	人鬼
大祀		社稷	宗廟
中祀	風雲雷雨	城隍, 嶽海濱	先農, 先蠶, 文宣王, 歷代始祖
小祀	靈星	七祀	馬祖, 先牧, 馬步, 馬社

사대부는 국가 의례의 축소 형태인 가례(家禮)와 사묘(祠廟)의 관리를 통해 종법(宗法) 질서를 강화하고 혈연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가례는 각 개인 또는 가(家)의 수준에서 조상의 위패(位牌)를 모신 가묘(家廟)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사대부는 따로 존재하는 종교 전문가의 도움없이 스스로 제사를 주관하는데, 이런 현상을 종교 용어로 표현하면 '萬人 司祭'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물론 양반 사대부 집안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이 가례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은 지배층의 중심 종교인 유교를 단지 교리를 익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례를 반복함으로써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대부 집단의 종교 이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대부 이외의 사회 집단에게 유교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동시에, 사대부 집단이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확인하는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유교식 제사 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불교 제의는 물론 무교의 굿을 비롯한 각종 민간신앙 형태의 제의가 같은 시대에 병존하고 있었다. 이들 각 종교는 나름대로 독특한 교리 체계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제의 구조를 확립하고 있었다. 지배층은 이들 각 종교를 억압하면서 유교를 통한 국가 건설과 운영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무작정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억압하면서 부분적으로는 허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제사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 자체가 유교 국가로서 왕실과 지

배충이 먼저 유교 원리를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국가 제사가 국가 내의 전 인민을 대표하는 행위로 보여지기를 바랐다고 할 수 있다.

3. 기본 제사의 종류와 내용

1883년과 1884년도 「濟州啓錄」에는 조정의 지시에 따라 濟州牧과 大靜縣 旌義縣에서 각각 제사를 거행한 내용이 실려 있다. 내용을 보면 한 해 두 차례씩 지시가 내려오는데 시행할 제사의 종류와 시행 일자, 그리고 제사 때 사용할 향축폐(香祝幣)까지도 보내오고 있다. 지방 행정기구인 제주목과 각 현에서는 이에 따라 주재(主宰)할 헌관(獻官)을 정하고 정해진 격식에 따라 제사를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표 2〉 제주도의 국가 의례

儀禮 種類	主 宰	濟州牧	大靜縣	旌義縣
社稷大祭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濟州牧使 前濟州判官 前正言	大靜縣監 幼學 幼學	前旌義縣監 幼學 幼學
釋奠祭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濟州牧使 前濟州判官 前正言	大靜縣監 幼學 幼學	前旌義縣監 幼學 幼學
漢拏山祭	獻官	濟州牧使		
蠶祭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濟州牧使 濟州判官 前僉使		
風雲雷雨祭	獻官	濟州牧使		
城隍發告祭 初巡祭 二巡祭	獻官 獻官	前濟州判官 濟州判官	大靜縣監 大靜縣監	前旌義縣監 旌義縣監
厲祭 初巡祭 二巡祭	獻官 獻官	前濟州判官 濟州判官	大靜縣監 大靜縣監	前旌義縣監 旌義縣監

〈표 2〉에서 보듯이 제주도에 행한 국가적 차원의 제사는 크게 사직대제(社稷大祭), 석전제(釋奠祭), 한라산제(漢拿山祭), 뚝제(蠶祭),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 성황밭고제(城隍發告祭), 여제(厲祭)의 7종류이다. 제주목에서는 7종류의 제사를 다 지내지만, 縣 단위에서는 이 가운데 한라산제, 뚝제, 풍운뇌우제를 뺀 사직대제, 석전제, 성황밭고제, 여제의 4종류 제사만이 실시되고 있었다.

조선왕조 시대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 관아에서 주관하는 각종 제사가 차이가 있었다.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제사를 다 지내지만, 하급 행정 단위로 내려갈수록 제사의 대상과 규모는 축소되었다. 茶山의 『牧民心書』를 보면 “군현의 제사로는 三壇과 一廟가 있으니 그 제사지낼 대상을 알아야 마음에 향념(向念)이 있게 되고, 마음에 향념이 있어야 이에 재계(齋戒)가 되고 경건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三壇은 사직단(社稷壇)·여단·성황단(城隍壇)을, 一廟는 문묘(文廟)를 가리킨다. 바로 이 4가지가 조선왕조 시대에 각 지방 관아에서 행했던 최소한의 공적(公的)이고 정규적인 제사 대상이었다. 따라서 정의현과 대정현에서는 이 4가지 기본 제사를 집행하고, 제주목은 이와 함께 한라산제, 뚝제, 풍운뇌우제를 더 지낸 것이다.

우선 삼읍에 공통된 4 종류의 제사를 보자. 이 중에 사직대제와 석전제가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하게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국가가 주관하는 제사는 크게 大祀·中祀·小祀로 구분되는데, 사직대제는 大祀, 석전제는 中祀에 속한다²⁾. 사직대제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였다. 흔히 “宗廟 社稷”이라는 말이 곧 조정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두 제단이야말로 국가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숭배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종묘는 왕실의 조상을 모시는 제단이므로 왕실에서만 제사를 지낸다³⁾.

반면 사직단은 왕이 있는 한성부에만 설치된 것이 아니라 각 지방마다 사직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 이유는 社·社神이 토지의 神을, 그리고 稷이 곡식의 신을 가리키며, 사직에 대한 제사는 곧 농업 국가

2) 『經國大典』禮典.

3) 물론 왕실의 고향인 全州에 있는 禮慶殿과 慶基殿에서는 절기마다 제사가 시행되고 있었다.

로서 국가 경제의 기초를 지켜주는 신에 대한 제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제사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지방 주현 수준에서도 함께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정기적인 제사는 仲春·仲秋의 上戌日 두 차례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州縣 수준에서 社稷을 모시는 社稷壇은 각 邑城 서쪽에 社와 稷을 합하여 하나의 壇으로 설치하되 石主도 없고 配享位도 없었다고 하는데⁴⁾, 제주도도 그 예를 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묘(文廟)는 향교에 있는 공자의 위패를 모신 사당(祠堂)이다. 따라서 釋奠祭는 공자를 비롯한 그 뒤의 유현(儒賢)들을 모시고 지내는 제사 의식이 된다. 유교는 특히 교학(敎學)을 중요시했지만 학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옛 성현과 스승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신앙으로서의 실천적 행위를 병행했다. 중앙에서는 성균관, 지방에서는 각 지방 향교의 문묘가 바로 제사 장소였다. 석전제를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행위 자체가 향교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사였으므로, 특히 지방 유생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제사였다. 이 두 제사는 그 지방 수령이 初獻官을 맡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獻官도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을 모두 갖추고 있다.

성황발고제와 여제는 둘 다 小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의 두 제사와 비교하면 격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대중들의 관심은 컸다⁵⁾. 왜냐하면 이들 제사에서 모시는 신이야말로 바로 민간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성황발고제와 여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성황신이 여귀의 우두머리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산은 “城隍神은 민간에서 累石壇·神樹·土偶 등 갖가지 형태의 神體로 구현시켜 신앙하는 것과는 달리 官에서 유교식으로 位版으로 형상화시켜 제사하는 신이다. 이것은 중국에서는 본래 城池를 수호하는 신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그렇지가 않고, 못 여鬼를 통솔하는 神으로 더 부각되어 있다.”⁶⁾고 하였는데, 제주도의 경우도

4) 『牧民心書 Ⅲ』 219쪽.

『新增 東國輿地勝覽』 제38권 濟州牧 〈祠廟〉를 보면 “사직단(社稷壇) : 주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5) “社稷이 비록 높다고 하나 다만 법령 격식에 따라 제사를 지낼 뿐이고, 화를 없애고 복을 부르기 위해 치성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유독 성황 만이 그 대상이 될 따름이니 그 禮가 도리어 무겁지 아니한가”(丁若鏞, 『牧民心書 Ⅲ』, 茶山硏究會 譯註, 創作과批評社, 224쪽).

6) 茶山硏究會 譯註, 牧民心書 Ⅲ, 創作과批評社, 223쪽.

이와 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증 동국여지승람』 제38권 大靜縣 부분을 보면 <祠廟> 성황사(城隍祠) 항목에 “城隍祠 : 다른 이름은 차귀당(遮歸堂)이다. 풍속이 뱀과 귀신을 제사한다. 집 벽 들보 주추에 여러 뱀이 덩어리로 뭉치는데 제사할 때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상서를 삼는다. 차귀(遮歸) 글자는 곧 사귀(蛇鬼) 글자의 그릇된 것이다. 현 서쪽 26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대정현에서는 차귀당이 곧 성황사였으며, 성황신이 뱀으로 구체화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대정현의 기록이므로 제주읍과 정의현의 사정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주도에서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뱀을 성황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을 본다.

한편 여귀에 관해 다산은 “『左傳』에 이르기를 『귀신이 돌아가 의탁할 곳이 있으면 여鬼가 되지 않는다. 돌아가 의탁할 곳이 없어 혹 사람에게 해독을 끼치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옛날에는 오직 후손 없는 자만 여가 되었는데, 후세의 여는 물에 빠져 죽은 자, 불에 타서 죽은 자, 짓눌려 죽은 자, 刑을 받아 죽은 자들을 제사지내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후손이 꼭 없지는 않으니 만큼 지금의 여는 옛날의 여와는 다르다.”(221쪽)고 하여 ‘제사를 받아 먹지 못하는 불쌍한 귀신’(無祀鬼)를 ‘여’로 보았다.

<표 3> 大靜縣 제사의 종류와 내용

	헌관	1883년 10월	1884년 3월	1884년 10월
社稷大祭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大靜縣監 金圭任 幼學 李宗珉 幼學 金亨鼎	大靜縣監 金圭任 幼學 姜希盛 幼學 姜宗武	大靜縣監 高龍振 幼學 姜聰圭 幼學 姜世興
釋奠祭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大靜縣監 金圭任 幼學 姜希盛 幼學 金洙文	大靜縣監 金圭任 幼學 金琪煥 幼學 李宗珉	大靜縣監 高龍振 幼學 姜尚鎭 幼學 姜希成
城隍發告祭 (初巡祭) (二巡祭)	獻官 獻官	大靜縣監 金圭任 大靜縣監 金圭任	大靜縣監 金圭任	大靜縣監 高龍振 大靜縣監 高龍振
厲祭 (初巡祭) (二巡祭)	獻官 獻官	大靜縣監 金圭任 大靜縣監 金圭任	大靜縣監 金圭任	大靜縣監 高龍振 大靜縣監 高龍振

<표 4> 旌義縣 제사의 종류와 내용

	헌관	1883년 10월	1884년 3월	1884년 10월
社稷大祭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旌義縣監 李友植 幼學 金達秋 幼學 梁達仁	旌義縣監 洪在晉 幼學 吳東煥 幼學 吳成說	旌義縣監 龐友亮 幼學 夫達天 幼學 金成浩
釋奠祭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旌義縣監 李友植 幼學 金達秋 幼學 梁達益	旌義縣監 洪在晉 幼學 康始弘 幼學 梁達仁	旌義縣監 龐友亮 幼學 金宗律 幼學 金應河
城隍發告祭 (初巡祭) (二巡祭)	獻官 獻官	前旌義縣監 李友植 旌義縣監 洪在晉	幼學 姜始弘 旌義縣監 龐友亮	旌義縣監 龐友亮
厲祭 (初巡祭) (二巡祭)	獻官 獻官	前旌義縣監 李友植 旌義縣監 洪在晉	幼學 姜始弘	旌義縣監 龐友亮 旌義縣監 龐友亮

따라서 성황신과 여귀는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으며, 여귀를 불러 모으기 위해 먼저 그 우두머리인 성황신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 사흘 뒤 여제를 지내는 절차가 확립된 것이다⁷⁾.

<표 3>과 <표 4>를 보면 사직대제와 석전제는 대정현과 정의현 모두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모두 정해져 완벽한 격식을 갖추어 진행된 반면, 성황

7) 『五禮儀』에 의하면, 城隍神座는 風雨雷雨神座의 오른쪽에 놓고 모두 남향이 되게 하며, 厲祭 때에는 먼저 發告祭를 城隍壇에 행한다고 했다. 또 여제 지내는 날에 城隍位版을 받들어 여단에서 제사를 행한다고도 했다... 『發告祭란 앞으로 있을 행사에 관해 미리 神에게 고하는 祭祀이다. 城隍發告祭는 여제 3일 앞서 지냈다』... 『그 發告祭文은 이렇다. 『아무 달 아무 날에 北郊에 壇을 베풀고 온 경내의 無祀鬼神들에게 제사지내려 하노니, 바라건대 城隍의 神力을 써서 그들을 불러 제단으로 모여들게 하시라.』(이 祭文의 式은 중앙과 지방이 공통이나 지방의 경우에는 北郊를 城北으로 바꾼다.) 살펴보면 대개 성황신으로 하여금 厲鬼를 불러 모으게 한 것이다.』(『牧民心書III』, 225쪽) 『厲壇은 여귀들을 제사하는 壇으로 반드시 성의 북쪽에 설치하게 되어 있었다. 조선 定宗 2년(1400)에 중앙과 지방 각 州縣에 여단을 설치했다.』(『牧民心書III』, 223쪽) 『新增 東國輿地勝覽』 제38권 濟州牧에는 『여단이 州 동쪽에 있고, 城隍祠는 州 남쪽 16리 한라산 아래에 있다』고 되어 있다.

발고제와 여제는 한 명의 현관이 치루는 간소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직대제와 석전제는 현직 현감이 초헌관을 맡고 있으며, 아헌관, 종헌관을 지방 유지 몇몇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었다. 지방 유지가 모두 관직 책임자가 아닌 유학(幼學)임은 당시 지역 유지들이 관직 얻기가 어려웠음을 말해주고 있다. 성황발고제와 여제는 현감이 주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의현에서 보듯이 전직 현감이나 지방 유지가 대신하는 것도 가능했다. 3월에는 1차례만 실시하지만, 10월에는 초순제와 이순제로 나뉘어 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알 수 없다.

4. 특수 제사의 종류와 내용

〈표 5〉를 보면, 제주목에서는 사직대제와 석전제는 목사와 관관이 각각 초헌관과 아헌관을 맡도록 되어 있었지만, 관관이 초헌관을 맡는 경우도 있었으며, 종헌관은 지방 유지가 맡고 있었다. 반면 성황발고제와 여제는 현관을 모두 관관이 맡아 격이 한 단계 낮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형식상 격이 낮더라도 실제로는 이 두 제사가 앞의 두 제사보다 일반 대중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말하자면 두 제사가 유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민간신앙으로 크게 중요시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민간에게 그대로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손에 쥐고 있으려는 의도에서 제사를 공식적으로 지내는 것이므로, 구태여 수령이 꼭 지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縣 단위에는 없지만 목 단위에서 만 시행하는 제사가 한라산제(漢羅山祭), 풍운뇌우제(風雲雷雨壇), 뚝제(蠶祭) 3 종류가 있었다. 이 가운데 뚝제는 일년에 두 차례 모두 격식을 갖추어 실시되었는데, 뚝제는 군대의 깃발 중 가장 중요한 蠶旗에 지내는 제사로, 국가 방위 차원에서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집행되었다. 반면 풍운뇌우제는 조선초기부터 계속 실시되어 왔는데, 이 형상 목사의 건의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복설되었다⁸⁾.

8) 『東國輿地備考』에는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 서쪽으로 3리에 있으며, 옛날에는 있었는데 중간에 폐하였다가 본조 숙종 기해년에 다시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표 5> 濟州牧의 제사 종류와 내용

		1883년 10월	1884년 3월	1884년10월
社稷大祭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濟州牧使 前濟州判官 李學善 前正言 韓錫胤	濟州牧使 沈○○ 濟州判官 高景峻 前正言 韓錫胤	濟州判官 高景峻 前正言 金炳洙 幼學 李基鎔
釋奠祭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濟州牧使 前濟州判官 李學善 前正言 韓錫胤	濟州牧使 前濟州判官 李學善 幼學 金斗鉉	濟州牧使 沈○○ 濟州判官 高景峻 進士 金亮洙
漢拏山祭 (初巡祭) (二巡祭)	獻官 獻官	濟州牧使	濟州牧使 沈○○ 濟州牧使 沈○○	濟州牧使 沈○○
森祭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濟州牧使 濟州判官 高景峻 前僉使 梁濟夏	濟州牧使 沈○○ 濟州判官 高景峻 前縣監 康履緜	濟州牧使 沈○○ 濟州判官 高景峻 前中軍 金基鎬
風雲雷雨祭	獻官	濟州牧使	濟州牧使 沈○○	濟州牧使 沈○○
城隍發告祭 (初巡祭) (二巡祭)	獻官 獻官	前濟州判官 李學善 濟州判官 高景峻	濟州判官 高景峻 濟州判官 高景峻	濟州判官 高景峻
厲祭 (初巡祭) (二巡祭)	獻官 獻官	前濟州判官 李學善 濟州判官 高景峻	濟州判官 高景峻	濟州判官 高景峻 濟州判官 高景峻

그런데 당시 이형상목사가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풍운뇌우단은 중앙 조정에서만 제사를 지낼 뿐 다른 지방에서는 제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유독 제주도에서는 제사를 지내왔으며, 그것도 "군(郡)을 설치한 초부터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이 있어서 본주에서 치제(致祭)하였다"⁹⁾는 기록에서 보듯이, 이미 조선시대 이전인 탐라국 시대부터 계속되어왔고, 이것을 고려 숙종 때 군현제에 편입되면서도 계속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 이형상은 "본주의 구례는 매년 춘추 사직제일(社稷祭日)에 따로 사직단 아래에 단을 하나

9) 『肅宗實錄』 肅宗 45년(1719) 11월 壬申.

설치하여 풍운뇌우에 제사하며 또 위판(位板)을 만들어 사직의 위판을 두는 실(室)에다 봉안합니다. 생각하건데 필시 전부터 탐라의 구례를 답습해 온 것입니다.”¹⁰⁾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직단 아래에 독립된 단을 따로 설치하여 사직대제를 지낼 때 함께 제사를 지내온 것이 탐라국 때부터 이어져온 관례였던 것이며, 조선후기까지도 이 관례는 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 어찌서 수많은 목사가 거쳐갔는데도 오랫동안 이 관례가 깨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제주도 나름대로의 특징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며, 그것은 다름아닌 풍운뇌우제에 대한 제주민들의 지대한 관심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¹⁾. 결국 제주민들의 열렬한 바람 때문에 풍운뇌우제는 곧바로 복설되었던 것이다.

한라산제는 조선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특히 기우제를 지낼 때 다른 산악에 제사를 지내면서도 제사 대상에서 한라산이 빠지는 것을 보면, 그 위치가 확고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태종 때의 두 기록을 보면¹²⁾ 사전(祀

-
- 10) 李衡祥, 「濟州請祀典變通狀」, 高昌錫 譯, 「『瓶窩集』中 濟州關係 記事」, 『星州』 5, 高氏宗門總本部, 1995, 302-3쪽.
- 11) 제주에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을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앞서 제주는 군(郡)을 설치한 초부터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이 있어서 본주에서 치제(致祭)하였다. 이형상(李衡祥) 목사가 주관(州官)이 사사로운 제사(祭祀)를 할 바가 아니라고 아뢰어 혁파하였다. 그 후에 섬에는 해마다 흉년이 들고 여역(疫疫)이 그치지 않으니 주민(州民)들이 숭배하던 단사(壇祀)를 혁파(革罷)한 까닭이라 하여 지금의 목사 정동후(鄭東後)에게 복구(復舊)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정동후(鄭東後)가 조정에 아뢰니 이에 이르러 예조가 이를 허락하도록 청하였다. 세자가 이를 따라 이 해부터 서울에서 향축(香祝)을 하송하여 제사하였다(『肅宗實錄』 肅宗 45년(1719) 11월 壬申).
- 12) “예조에서 제주의 문선왕(文宣王) 석전제(釋奠祭) 의식과 한라산제(漢嶽山祭) 의식을 올렸다. 석전제 의식은 각도의 계수관(界首官)의 예에 의하고, 한라산제 의식은 나주(羅州) 금성산(錦城山)의 예에 의하여 제사전(諸祀典)에 기재된 대로 봄·가을에 제사하게 되었다.”(『太宗實錄』 太宗 18년(1418) 4월 신묘).
- *내시(內寺)·별감(別監) 등에 명하여 향축(香祝)을 받들고 각도 도관찰사(都觀察使)에게 주어서 명산대천(名山大川)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도록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 한라산은 제산(諸山)의 초제일(初祭日)에 아울러 제사를 지내십시오” 하니, 하교하기를 “제산(諸山)은 이미 모두 제사를 지내었는데, 유독 이 산만을 어찌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았는가. 만약 사전(祀典)에 실려있지 않은데 경솔하게 거행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이에 앞서 제주 감목관(監牧官)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는가. 그만 두어라. 전규(前規)가 옳다.” 하였다(『太宗實錄』 太宗 18년(1418) 6월 정미).

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중단하도록 다시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공식 제사가 열리지 않더라도 감목관에 의한 제사는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쨌든 숙종 때 이형상목사는 한라산신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면서, 사전(祀典)에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다고 건의하고 있는데¹³⁾, 이를 보면 한라산제가 중단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정말 중단되었던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중단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형상목사가 생각하는 방식의 유교식 한라산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탐라국 시절부터 치루어오던 전통적인 방식의 제사가 제주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광양당(廣壤堂) : 주 남쪽 한라 護國神祠에 있다. 속설에 “전하기를, 漢擊山神의 아우가 나서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었고, 죽어서는 신이 되었다. 고려 때 송나라 호종단이 와서 이 땅을 압양(壓穰)하고 바다에 떠서 돌아가는데, 신이 화하여 매가 되어 돛대 머리에 날라 올랐다. 조금 있다가 북풍이 크게 불어 종단의 배를 쳐부수어 서쪽 지경 비양도 바위 사이에서 죽었다. 조정에서 그 신령스럽고 이상함을 포창하여 食邑을 주고 廣壤王을 봉하고 해마다 香과 幣帛을 내려 제사하였고 본조에서는 本邑으로 하여금 제사지내게 하였다” 한다.
○ 상고하건대 호종단이 와서 고려에 벼슬이 起居舍人에 이르고 죽었으니, 와서 땅을 압양하다가 배가 침몰되었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¹⁴⁾

광양당은 탐라 이래의 호국신을 모시는 사당이었으며, 여기서 모시는 호국신 광양왕은 다름아닌 한라산신의 아우라고 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이라기 보다는 민중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리고 심방들의 내력담 속에 담겨 있는 설화를 적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고려 조정이 식읍을 주고 광양왕이라는 호칭을 내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향과 폐백을 내

13) “嶽·海·濱이 祈告祭典에 실림과 名山大川이 小祀에 실려 있는 것 또한 禮意가 있습니다. 漢擊山 및 大海는 나름대로 中土에서 유명하게 일컬어지는 것인데, 祀典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州縣의 名山大川의 例에 따라서 香祝을 내리시어 제사를 행함이 事宜에 합당할 듯 하오니, 禮를 고찰하여 처리토록 하심이 어떠합니까”. 李衡祥, 「濟州諸祀典變通狀」, 高昌錫譯, 「瓶窩集」中 濟州關係 記事, 「星州」5, 高氏宗門總本部, 1995, 303쪽.

14) 「新增 東國輿地勝覽」第38卷 濟州牧 〈祠廟〉.

려주고, 또 조선왕조가 다시 제주목에서 공식적으로 제사하도록 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 제주민들은 광양왕에 관한 이야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으며, 광양왕과 한라산신에 대한 제사를 탐라국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신에 대한 제사로 여기면서 제주민들의 힘으로 정기적으로 지냈을 것이다. 한편 제주목에서는 이를 목인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이 때 제사 방식은 유교식이 아닌 무교식의 ‘굿’이었을 것이다.

결국 이형상 목사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한라산제는 공식적인 국가 제사로 채택되었다. 『東國輿地備考』에 “한라산단(漢羅山壇) : 본조 숙종조에 처음으로 제사하였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유교식 한라산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낸다는 것은 한라산신에 대한 민간 제사를 곧바로 탄압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한라산신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므로써 국가가 인정하고 유교식으로도 한라산신을 모실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5. 맺는 말

이상 간략히 19세기 제주도의 국가 제사의 종류와 내용을 검토하고, 그 역사적 연원을 더듬어 보았다. 제주도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국가 제사는 다른 지방과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고 실시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풍운뇌우제처럼 다른 지방에서는 지내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한라산제처럼 논란이 계속되어오다 조선후기에야 비로소 시작된 것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에서 실시된 유교식 국가 제사가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또한 탐라국 시대 이래의 무교식의 전통적인 제사 방식과 상당한 정도로 대립을 보이면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가 제사 가운데 사직대제나 석전제, 뚝제 등은 별다른 논란이 없었고, 조정에서는 이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제주민들은 이러한 제사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보다는 오히려 주변적이라고 해야할 격이 낮은 종류의 제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성황제와 여제, 그리고 풍운뇌우제가 그 대표적인 보기이다. 이 제사에서 모시는 신이 바로 제주민의 신앙 대상이었던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19세기에 와서는 국가 제사가 나름대로 정비되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제주민들의 신앙의 대상인 각종 신에 대한 제사를 국가가 반복적으로 주도함으로써, 국가가 제주민들의 삶을 지배하는 신들을 포용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제주민들을 유교적인 질서 속에 하나로 묶어두려고 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 제사의 실시 의도가 과연 제주민들에게 얼마나 먹혀들어 갔는지, 이같은 유교식 제사가 제주민들 사이에 강력하게 존재하던 무교의 각종 신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제압할 수 있었는지는 좀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